

임금구성항목	금액	단위	비고
기본급		원	
기타		원	
합 계		원	

- (4) 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5) 지각,조퇴,결근의 경우 시간급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 (6) 지급시기: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한다.
- (7) '갑'은 매월 '을'의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등의 법이 정한 항목을 공제한다
- (8) '갑'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6조 [휴일과 휴가]

- (1)'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1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제7조 [근로 계약의 해지 사유]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1) 3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2)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 (3)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5)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 (6) 약국내에서 도박, 음주, 시설물파괴, 풍기 문란, 공금 횡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7) 유언비어 발설, 회사 및 동료 비방, 연봉 공개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 (8) 제1조 2항 준수의 의무를 위반 한 경우
- (9) 상기 사유 외 취업 규칙과 노동 관계 법률상의 해고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다음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진다.

- (1) '을'은 재계약이 성사 되지 않거나 자진 퇴사시 '을'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하나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2) '을'의 고의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석 및 준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 규칙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기밀유지]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음은 물론 약국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약국에 발생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배상하며 회복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갑 : (서명.날인)

을 : (서명.날인)